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의 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처분 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7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어린이집의 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처분 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3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4.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

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의 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처분 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의 권익보호조치로서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 전원(轉園) 등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u>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u>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다음 각 호의</u> ----- -----.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생략)

1.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
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
실의 고지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5조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에 따라 운영정지·폐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운영정지 명령 및 폐쇄 명령의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정지 명령의 경우 연간 평균 47.8건, 폐쇄 명령의 경우 연간 평균 23.6건 수준임.

1)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최근 5년간 운영정지·폐쇄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기준: '26. 2. 2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2.
운영정지	58	82	40	29	30	0
폐쇄	30	24	38	17	9	0

* 자료: 교육부

□ 그런데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의 경우 자발적인 운영정지·폐쇄²⁾와 달리 영유아의 권익보호조치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고 하거나 한 경우 운영정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 전원(轉園) 등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49조의3³⁾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한 공표 제도를 운영

2)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 (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이 해당 공표사실을 모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당 공표 대상에서 일부 운영정지 명령 및 폐쇄 명령 사실은 제외⁴⁾되어 있음.

[운영정지·폐쇄의 사유별 권익보호조치 비교]

구분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폐쇄	자발적인 운영정지·폐쇄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권익보호조치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어린이집의 원장
권익보호조치 내용	전원조치(轉園措置) 등 ※ 구체적인 사항 미규정	전원조치(轉園措置),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
권익보호조치 절차	미규정	①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고지 ②전원조치 계획서, 폐지·휴지 사실 고지 증명 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③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 전원조치 여부 확인

3)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있고, 나머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금액 미만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면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폐쇄 시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가 운영정지 및 폐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영유아 보호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영유아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지대상을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입소를 신청하려는 보호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고지대상을 이미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로 한정하여 입소를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제외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신청 이전 단계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려는 개정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지의무 주체를 행위와 책임과의 상관관계 및 의무이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행위와 책임과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려는 보호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①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고지하는 방안, ②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하는 방안, ③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고지하도록 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셋째, 고지의 시기·방법·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고지의 시기·방법·절차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연 고지, 고지 주체별 상이한 고지방식 등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제도의 실효성까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참고자료 2 참고)를 고려하여 법률 또는 하위명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 시행 시 고지의무 부과 시점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해 입소한 영유아와 보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보호자에게 처분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87

구분	입법례
<u>고지</u>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③ <u>체육시설업자</u>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u>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u>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u>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u>게시</u>	「철도사업법」 제15조(사업의 휴업·폐업) ⑤ <u>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u>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⑤ <u>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u>하여야 한다.

참고 2

고지의 시기·방법·절차 관련 입법례

구분	입법례
법률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③ <u>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u>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u>
하위 명령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② <u>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u>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u>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u>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u>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u>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